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창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1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

발 의 자: 한창민·백승아·고민정

안태준 • 박정현 • 용혜인

김 유·강경숙·서미화

문정복 · 강유정 · 김선민

민병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하는 대출로써,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그런데, 최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,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는 22,317명, 연체금액은 1,144억원이고, 부실채무자수는 53,964명, 채무금액은 3,2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나타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를 줄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.

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,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11조 및 제17조).

법률 제 호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"를 "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의 금리는 무이자로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제1항의 결정을 함에"를 "제1항의 생활비대출 금리를 결정함에"로 한다.

다만, 생활비대출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 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"대출잔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제11조에 따른 대출 금리를 등록금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(單利)로 적용한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"를 "대출잔액으로 한다"로 하고, 같은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 및 제1

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1조(대출 금리) ① 취업 후 상 제11조(대출 금리) ① -----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 ---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의 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 금리는 무이자로 한다. 다만, 생 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. 활비대출 금리는 매 학기 대출 <단서 신설> 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 이 결정하여 고시한다. ② 제1항의 생활비대출 금리를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 결정함에-----과 실질금리, 대출원리금의 상 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그 금리는 「국채법」에 따 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 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17조(대출원리금 계산) ① 채무 제17조(대출원리금 계산) ① ----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 -----<u>대출</u>잔액으 출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과 로 한다. <단서 삭제>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제 11조에 따른 대출 금리를 등록 금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

(單利)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8조제 2항에 따라 상환이 개시된 경 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